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처리 등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태안군

훈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태안군 ○○○읍 지방○○○○ ○○○
(전 태안군 ○○과)

내 용

지방○○○○ ○○○은 2015. 1. 13.부터 2017. 1. 8.까지 태안군 ○○과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징수유예” 업무 실무담당자 근무하였다.

충청남도 태안군에서는 2015. 4. 20. ○○○○○○(주) 등 15개 법인에 지방
세 세무조사 실시통보하고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8조제1항, 「태안군
군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16. 4. 25. ○○○○○○(주)에 취득세 등 6건 1,401백만원을 지방세 세무조사
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16. 7. 4. ○○○○○○(주)에 대하여 취득세 등
8건 1,539백만원을 2016.8.1.까지 아래[표1]과 같이 납부하도록 직권 과세 통지하
였다.

[표1] 세무조사결과 부과 현황

(단위 : 원)

세목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액	납세의무자
합 계	8건		1,539,609,570	
취득세	○○○○○ 등 건축물(○○○1)	1,598,303,922	61,900,610	○○○○○○(주)
취득세	지목변경(○○○1)	12,227,351,630	329,123,610	○○○○○○(주)
취득세	급배수시설(○○○1)	2,263,504,4356	60,926,720	○○○○○○(주)
취득세	지목변경(○○○2)	17,309,870,300	462,045,430	○○○○○○(주)
취득세	급배수시설(○○○2)	2,486,574,186	66,373,110	○○○○○○(주)
취득세	○○○○○ 등 건축물(○○○2)	12,112,283,716	464,388,310	○○○○○○(주)
재산세	○○읍 ○○리 ○○○○번지 등 ○○ 물(2014년)	15,028,032,385	47,137,300	○○○○○○(주)
재산세	○○읍 ○○리 ○○○○번지 등 ○○ 물(2015년)	14,396,657,949	47,714,480	○○○○○○(주)

「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 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부동산 취득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세무조사에 따른 조사 및 부과누락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안군 ○○과 지방○○○○ ○○○은 2016년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주)이 2014. 4. 18. 취득한 충청남도 태안군 ○○읍 ○○리 ○○○○ 소재 ○○○(707,220㎡, ○○○ ○○○, 이하 “이 건 ○○○ ○○”이라 한다) 및 2014. 6. 17. 취득한 같은 리 ○○○○-○ 소재 ○○○(714,790㎡, ○○○, 이하 “이 건 ○○○○○”이라 한다)의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및 급배수시설 등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제1항 제2호 및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이 이 건 ○○○○○○ 및 ○○○○○○을 해당 사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태안군 군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한 것을 확인하고 ○○○○○○○(주)이 이 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주)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 한 후에 이 건 ○○○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16. 7. 5. ○○○○○○○(주)에게 취득세 등 1,444,757,790원과 2014년도 및 2015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94,851,780원 합계 1,539,609,570원에 대하여서 세무조사 및 부과 통지하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이 건 ○○○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감면 내역과 부동산 취득일을 조사하지 않아 토지분 재산세 39건 5,871,590원과 토지의 취득세 1건 136,743,200원 등 총합계 40건 142,614,790원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 및 부과 조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관서의 지방세정 신뢰도를 훼손은 물론 이 건 ○○○ 관련하여 ○○○○○○○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되었다고 믿고 있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지방세정업무를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태안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과세대상임에도 과세가 누락된 재산세 등 40건, 142,614,790원을 추징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